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권칠승 · 김기표 · 박정현
박해철 · 신영대 · 김승원
박지혜 · 김영환 · 소병훈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,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.

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,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,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.

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,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제2호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2호 후단 중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”를 “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”를 “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”로 한다.

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중 “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”를 “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”로 한다.

제26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

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선거운동기간)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59조(선거운동기간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.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(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, 그 횟수는 8회(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)를 넘을 수 없으며,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</u>	2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

사용하여야 한다.

3. ~ 5. (생략)

제82조의5(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) ① (생략)

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·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(이하 “선거운동정보”라 한다)를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~ ⑥ (생략)
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 · 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1.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

위탁하여 전송하여야 한다.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82조의5(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관할선거
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
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(생 략)

나.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자,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자,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

다. ~ 너. (생 략)

2. ~ 4. (생 략)

④ · ⑤ (생 략)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· 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 략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자-----

다. ~ 너. (현행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u>2.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</u> <u>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</u> <u>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</u> <u>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</u> <u>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</u> <u>사람</u>	<u><삭 제></u>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⑫ (생략)	④ ~ ⑫ (현행과 같음)